



제418회국회(임시회)
제 6 차 국 방 위 원 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거보조비 지원〉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69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군무원 주거지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헌승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독신자숙소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등의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지원(관사, 간부숙소, 전세)을 받지 않는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지원(관사, 간부숙소, 전세)을 받지 않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이 1995년 이후 월 8만원으로 동결되어 실질적으로 주거 비용 보전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수당을 개선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제고하여 이들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현행 군인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은 「군인복지기본법」¹⁾에 따라 군관사·독신자숙소,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가 보유 또는 숙소 부족 등의 이유로 상기 2개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군인보수법」²⁾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개정안은 상기 2개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군인에 대하여 주택수당이 아니라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 ----- ----- ----- -----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 다. 월차임

2) 「군인보수법」 제14조(주택수당)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u>주거보조비(제1호 또는 제2 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제공받 지 못한 군인에 한정하여 제 공한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과 그에 근거한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자가(自家)를 보유하지 않은 직업군인의 경우 군 숙소(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이자, 월차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근무지역 내 자가를 보유한 직업군인의 경우 임대계약 또는 공동소유 등으로 인해 자가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³⁾

3)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0조(일반관사의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및 제24조(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 선정)에 따라 근무지역 내 자가를 보유한 경우 일반관사 제공·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위기조치요원 등으로 지정된 직위에 재직하는 자 중 각 군등의 장이 승인한 경우, 임대계약 또는 공동소유 등으로 인해 자가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등의 경우에만 주거지원이 가능함. 또한 간부숙소의 경우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자가 소유 시 3일 이내에 퇴거하여야함.

□ 이에 개정안은 군 숙소 제공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에 대해 주거보조비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된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한편 현행 주거지원 제도에서는 군인이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군인보수법」에 따른 월 16만원의 주택수당⁴⁾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의 취지는 중복지급보다는 현행 주택수당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의 주택 임차료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수당’을 ‘주거보조비’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두 제도의 중복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보수법」을 개정하는 등 관계법령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봄.

□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 및 군무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건립 위주의 주거지원 정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군인의 경우 군숙소가 아닌 주거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현재 건립된 군숙소의 운용률 저하 및 이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기획재정부는 주거보조비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이유

4) 주택수당은 1983년에 월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입되었고 1995년 이후 월 8만원 지급, 2023년부터 월 16만원으로 인상하였음. 그러나 주택 임차료 시세 등을 고려할 때 주택수당 금액은 여전히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임.

로 개정안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4